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겨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계약 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질을 향상 시키고자 다음 각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명확한 행당제도 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제공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을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병원이용에 따른 교통비.대중탕동행시 등 발생하는 교통비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2024.01.01.일 기준

급여제공시	금액(원)	본 인 부 담 금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지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30분이상	16,630	2,495	1,497	998
60분이상	24,120	3,618	2,171	1,447
90분이상	32,510	4,877	2,926	1,951
120분이상	41,380	6,207	3,724	2,483
150분이상	48,250	7,238	4,343	2,895
180분이상	54,320	8,148	4,889	3,260
210분이상	60,530	9,080	5,448	3,632
240분이상	66,770	10,016	6,009	4,006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시 120분 이상~180 이용가능

*치매가족휴가제 학대개편에 따라 2024.01.01.일부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도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이용이,모든 1~2등급 수급자 및 3~인지지원등급(치매가있을 경우) 도 단기보호 연간10일, 종일방문요양은 연간 20회 이용 할 수 있다

*1~2등급 수급자에게 월8회 270분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3~5등급 수급자는 월 4회 .210분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유급휴일,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증가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2024.01.01.일 기준

급여제공시	금액(원)	본 인 부 담 금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차량미사용	47,670	7,151	4,290	2,860
차량이용/40분 (가정내목욕)	61,072	9,161	5,496	3,664
차량이용/60분 (가정내목욕)	76,340	6,871	6,871	4,580
차량이용/40분 (차량내목욕)	67,736	6,096	6,096	4,064
차량이용/60분 (차량내목욕)	84,670	7,620	7,620	5,080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부)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수 있다.

-장기요양급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자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를 할 수 있다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이용자의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의부
-이용자 외에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의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할 의무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할 의무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을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등 기타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대하여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는 서면,전화,구두을 통한 통보고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주한다.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센터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때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제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 경 절 차
급여제공방법의 변경	○특정일에 대한 급여제공방법 변경 :특정일에 대해 이용자(보호자) 변경요청시 유선 또는 구두로 변경이 가능하며,센터는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그 사유를 기록 ○급여제공방법에 대한 계약 변경 : 변경 사항에 대힌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급여제공계획 재수립 후 이용자(보호자)동의 확인 필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으로 급여비용 변경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한 안내문 발송(필요시 이용자(보호자) 요청시 변경내용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직원이 이용자의 가정 및 이용자가 요청한 장소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1.방문요양 서비스 세부내용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세면도움,구강관리,식사도움,몸단장,옷갈아입히기,머리감기기,목욕도움,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체위변경,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외출시동행,일상업무대행,식사주비,청소 및 주변정리정돈,세탁

다.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일상생활함께하기

라. 정서적지원서비스 : 말벗,격려및위로,생활상담,의사소통도움등

2.방문요양 이용료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이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정한다.

3.수가표

가.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나. 노인장기요양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가를 적용한다.

※2024년 수가표(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등 급	월 한도액(원)	본 인 부 담 금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 등 급	2,069,900	310,485	186,291	124,194	면 제
2 등 급	1,869,600	280,440	168,264	112,176	
3 등 급	1,455,800	218,370	131,022	87,348	
4 등 급	1,341,800	201,270	120,762	80,508	
5 등 급	1,151,600	172,740	103,644	69,096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5	57,933	38,622	

4. 기타 비용부담 등 : 병원동행,대중목욕탕이용,시장동행 등의 개인 활동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기관은 서비스 개시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재상을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3. 배상책임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배상책임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운영규정은 **대평재가복지센터**의 월례회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

2.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수 있다.

3.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3조 (인력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센터에 센터장,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등은 노인복지법이 정하는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임용.배치한다.

본 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대평재가복지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